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구민 참여를 높여,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기 위함.
- 나. 주요내용
 - 위원회의 구성 조항 일괄 수정(안 제8조).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, 선정기준,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필요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개정함.
 -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 등의 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분야 및 우리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.
 - 안 제9조의 2에서는 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’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선행 입법례를 따르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구성의 방법인 공개모집을 기본조례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각 위원회 특성에 맞게 개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부서의견을 제시함.

※ 금천구 위원회 현황

위원회 수 현황

구 분	2021	2022	2023	2024
위원회 수	109	111	120	126

국(소)별 위원회 현황

계	민원감사 담당관	소통 담당관	행정 안전국	기획 경제국	복지 가족국	푸른미래 도시국	문화 환경국	교통 건설국	보건소
126	6	2	30	24	22	14	11	10	7

설치 근거별 위원회 현황

구 분	법 령	조 례	기 타	계
			(규칙, 훈령 등)	
위원회 수	66	52	8	126

위원구성

총 계	당연직 위원수(명)			위촉직 위원수(명)		
	계	남	여	계	남	여
1,375	426	252	174	949	532	417

- 참고로 서울시 5개 자치구(강서, 구로, 동작, 영등포, 동대문)가 기본조례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